



MINI Market Report

국가	중국
제품	김치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중국 마케팅 방안	1
1. 현지 시장 특징	1
2. 현지 시장 진출 TIP	2
II. 중국 시장 정보	4
1. 김치 수입 추이	4
2. 김치 생산 동향	6
3. 김치 소비 동향	7
III. 중국 가격 정보	9
IV. 중국 유통 정보	14
1. 식품 유통채널	14
2. 식품 유통구조	16
3. 김치 유통현황	17
V. 중국 통관 정보	19
1. 관세 및 기타 세금	19
2. 통관 거부사례	21
3. 통관 절차	22
4. 통관 유의사항	23
VI. 중국 검역 정보	25
1. 수입 식품의 검험검역	25
2. 수출식품의 검험검역	28
VII. 중국 라벨링 정보	29
1. 식품 라벨 관리 규정	29
2.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 검험 감독 관리 규정	32
VIII. 중국 바이어 정보	44

※ 참고자료

I 중국 마케팅 방안

1. 현지 시장 특징

□ 한중정삼회담으로 열릴 김치 수출길

- 그동안 중국은 자국기준검역 규제를 이유로 한국 김치 수출을 제한했지만 지난 7월 한중정삼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적으로 한국 김치 수출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 당초 중국은 김치에 포함된 대장균 수가 100g 당 30마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위생증명서 규제를 내걸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 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김치 재료값이 중국 보다 5~10배 비싸고 중국 소매점에서의 김치판매가격도 5배 가량 높아 중국 김치에 비해 한국 김치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중국 진출을 고려해봐야 함
- 중국 소비자들이 이미 산둥성, 지린성, 랴오닝성 등에서 생산된 중국산 김치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맛 또한 고려해봐야 할 대상임
- 2003년 사스(SARS)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에서 한국 희생자가 없는 이유가 김치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김치가 크게 주목을 받아 그 당시 한국 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

□ 중국 식료품 시장 특징

- 중국의 식료품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넓은 땅에서 직접 재배한 중국 본토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생산자가 있는 국가이기도 함
-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슈퍼마켓에서 수입된 식료품이나 외식을 통해 도시 거주민들이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있음

□ 중국 유통 특징

- 중국의 주먹구구식 유통망은 식품유통에 있어 걸림돌로 꼽히며 거래를 할 때, 비즈니스 차원의 이익보다는 얼마나 얼굴을 자주 보았는지, 서로의 관계 guanxi(关系)가 더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음
- 물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유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 손실이 크고 능률이 낮으며 효과와 이익이 부족한 편임
- 현재 중국 내에 저온 유통체계가 아직 형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 저장 등 물류 과정에서 손실률이 25~30% 정도에 이름

□ 중국 소비 특성

- 동쪽 지역은 세계 각국의 유명 브랜드가 런칭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현대적인 유통시장이 중국 내에서도 가장 잘 발달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 유럽, 미국 등 서양제품에 대한 고급 이미지 포지셔닝이 분명하며 고급, 중급, 저가 매장과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로트를 통한 식품유통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
- 광둥성의 경우 홍콩을 통해 수입식품의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며 많은 수입식품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복건성의 경우 대만과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대만식품의 인지도 및 수입액이 특히 많은 시장임

2. 현지 시장 진출 TIP

□ 관광 혹은 여행 관련 홍보 필요

- 한국내 김치체험관에 중국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 혹은 여행 관련 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홍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업체가 시트립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태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하는 나라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하였음
- 시트립은 “올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는 지난해에 견줘 40% 이상 폭증할 것” 이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관광지인 제주도를 무

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한 조처에 크게 힘입었다” 고 밝힘

-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400만명에 이룸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이 필요할 전망

□ 수출 성공 사례 벤치마킹 필요 : 종가집의 중국 시장 진출 성공사례

- 1987년부터 한국 전통음식을 이끌어온 종가집은 ‘김치’를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 중임
- 종가집 북경법인은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오랜 기간동안 시장조사를 걸쳐서 2003년 중국에 진출하였고 단 3년만에 안정적인 전국 판매망과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음
- 종가집의 중국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2003년~2007년)
 - 2002년 11월 종가집 중국 진출계획 그룹보고 : 해외수출 기지화, 중국시장 선점
 - 2003년 07월 22일 토지사용권 계약
 - 2003년 10월 11일 공장건설 착공
 - 2003년 10월 22일 영업집조 수취
 - 2004년 01월 10일 1차 투자 자본금 300만 USD 유입
 - 2004년 06월 10일 1차 건축 및 설비공사 완료
 - 2004년 06월 22일 내수 출하개시
 - 2004년 07월 01일 수출 출하개시
 - 2005년 07월 25일 김치업체 최초로 ISO9001 및 HACCP취득
 - 2007년 04월 20일 법인명 “금성(북경)식품 유한공사”로 변경
- 수차례 출장을 통하여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탐문했으며 2003년 투자의 시작과 더불어 1년간의 세밀한 시장조사 및 영업망 구축으로 진출 다음 해인 2004년 북경 제품 출시

II 중국 시장 정보

1. 김치 수입 추이

- 김치는 가공식품의 일종으로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Acetic Acid or Sugar, not Frozen(식초, 초산, 설탕을 사용하지 않으며 얼리지 않고 보존된 채소류 또는 그의 혼합물)’으로 분류됨

– HS CODE는 「200599」로 나타남

< HS CO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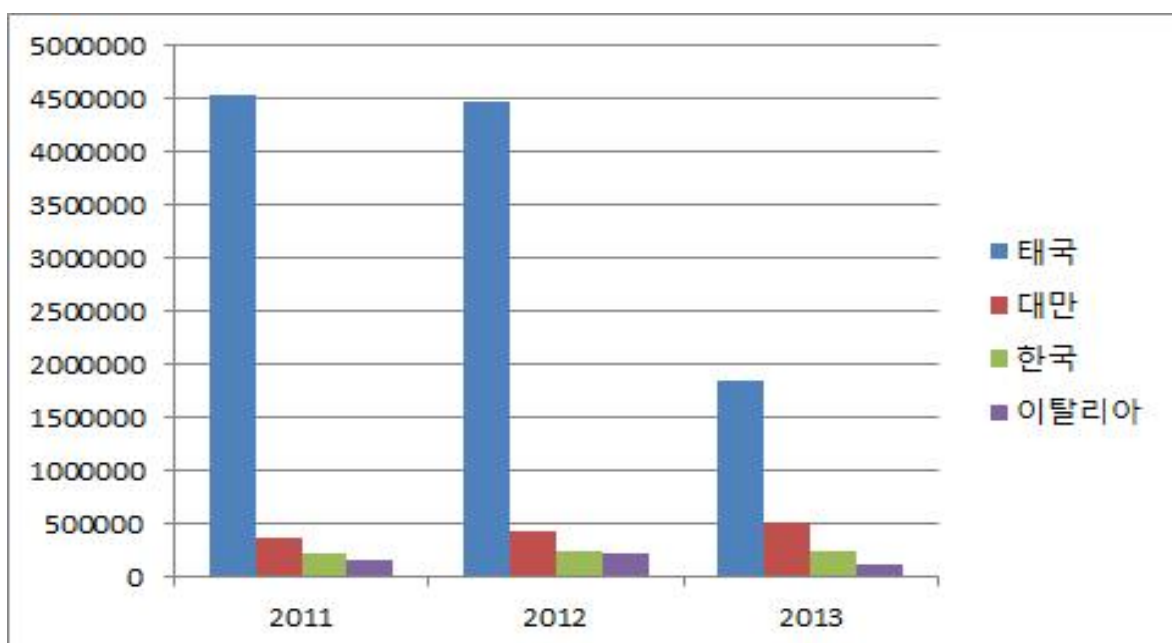
2005.991.000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Acetic Acid or Sugar, not Frozen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200599」에 대한 중국 수입 추이

< 중국 수입 통계 >

품목: 200599 식초, 초산,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얼리지 않으며 보존된 채소류 또는 그의 혼합물



Partner Country	Value (USD)			% Share			% Change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3/2012
World	6,414,448	6,555,730	4,410,917	100.00	100.00	100.00	-46.67
Thailand	4,717,909	4,357,384	1,730,713	80.78	77.10	60.82	-58.72
Taiwan	563,767	635,931	763,760	6.61	7.50	16.75	16.92
Korea South	374,576	497,431	646,638	3.98	4.05	7.73	-0.18
Italy	169,110	231,801	231,788	2.70	3.98	4.15	-45.44
France	67,709	106,892	192,576	0.49	0.92	1.84	4.86
United States	73,460	115,878	169,681	1.19	1.07	1.36	-33.24
Germany	44,316	68,165	134,066	1.45	0.42	0.83	2.48
Vietnam	153,096	173,014	93,328	0.59	1.02	0.73	-62.42
Poland	16,833	51,803	79,108	0.02	0.10	0.70	248.06
Peru	53,697	66,101	69,018	0.32	0.34	0.68	3.39

출처 : GTA (www.tradestatistics.com/gta)

- 중국은 2013년 441만 917달러에 이르는 김치류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태국, 대만, 한국 이탈리아 등이 있음
-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태국으로, 2013년 태국으로부터 1,730,713달러의 김치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60.82%, 전년 대비 58.72% 하락한 수치임
- 태국에 이어 대만이 2위로 76만 3,760 달러 규모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국은 3위로, 중국에서 64만 6,638 달러 규모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67% 대폭 감소하였으며 국가별 수입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폭을 보임

2. 김치 생산 동향

□ 김치 생산 현황

- 중국은 연간 30만 톤의 김치를 생산하여 대략 24만 톤에 달하는 김치는 수출하고 6만 톤 내외의 김치를 소비하고 있음
- 1990년대까지 중국은 자가소비의 형태로 김치를 소비하였으나 2003년 사스발생 이후 상업성이 부각되면서 공장형 생산이 증가하였음
 - 한국독자, 교포운영, 한중합자, 중일합자 등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연간 생산되는 김치 30만 톤 중에 약 20만 톤이 산둥성에서 생산되며 칭다오에서 약 8톤이 생산되고 있음
- 내수소비 증가로 인해 내수 비율이 상승추세이며 전체 생산량의 5~1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 중국 내 한국계 주요 김치 제조업체 현황

- 북경대상식품은 2004년 7월에 베이징 인근에 김치공장을 설립하여 배추김치, 알타리김치, 깍두기 등 일반김치와 살균김치와 볶음 김치를 생산하여 내수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음
- 경북궁식품은 1993년 칭다오에 김치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내 교민 및 로컬시장에 100% 내수 판매하고 있음
 - 상해, 북경을 비롯한 해남도, 청두까지 중국 전역 판매
 - 로컬보다는 교민시장을 위주로 유통됨
- 송덕식품은 중국 칭다오에 소재한 업체로 생산량의 80%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는 내수로 판매함
 - 한국 수출김치는 부산, 천안, 인천, 서울 소재 식당으로 공급

3. 김치 소비 동향

□ 중국 내 김치 소비동향

- 초기에 중국인들은 한국 김치의 매운맛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 하였지만 느끼한 중국음식과 김치의 조합으로 매년 김치시장은 확대되고 있음
 - 북경 중가집 김치의 경우 최근 매출은 증가추세임
 - 중국의 사천요리, 호남요리 등 매운맛을 선호하는 층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의 북방지역은 면, 만두 등의 소비가 많은데 라면을 즐기는 중국소비자들의 특성을 감안해보았을 때, 김치의 소비층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인은 연간 440억 개의 라면을 소비하며 이는 개인당 33개 정도임
- 김치 소비 지역은 상해 화동지역 및 북경 뿐만 아니라 청도를 포함하여 우한, 충칭 등 내륙지역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내 한식당과 방한객 증가로 소비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내 한식당 개수는 2009년 1,981개에서 2012년 2,907개로 전년대비 46.7% 증가하였으며 방한 중국관광객은 2013년 283만명에서 2014년 430만명으로 전년대비 51.9% 증가함
- 중국 내에서 선호하는 김치는 배추김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상해 소비자는 젓갈을 기피하고 청도와 우한은 젓갈, 파, 마늘을 선호함

□ 중국 김치 소비 트렌드

- 중국의 대부분 서민가구는 소형냉장고 1대로 냉장보관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김치를 보관하는데 있어 편이성을 선호하며 김치 보관 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일회성”이나 “용기형” 김치를 선호함
- 중국인들은 단순히 맵기만 한 김치보다 약간의 단맛이 첨가된 덜 매운맛을 선호하며 지역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북방지역에서는 약간 매운 맛을, 남방지역에서는 덜 매우면서 약간 단 맛이 나는 김치를 선호함

-
- 중국인들은 김치의 포장도 고급스러우면서 외관이 수려한 포장을 선호하며 한국 김치와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차별화를 위해서 재질의 고급스러움과 멋진 디자인이 요구됨
 - 최근 중국소비자들도 식품안전 문제에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며 위생과 안전성이 추구된 상품이 선호됨

III 중국 가격 정보

□ 중국 내 가격 정보

- 한국의 김치 재료값이 중국보다 5~10배 비싸고 중국 소매점에서의 김치 판매가격도 5배 가량 높기 때문에 보통의 한국 김치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온라인 오픈 마켓 판매 현황

- 온라인 한국김치 판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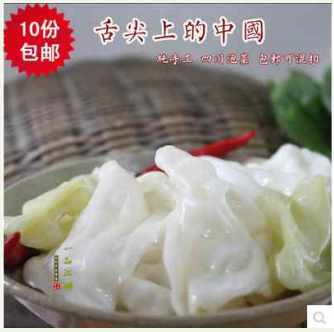
업체명	종가집	폴무원	부자아빠
제품 이미지			
제품명	종가집 맛김치(400g)	폴무원김치(200g)	부자아빠김치(1,000g)
가격	CNY 20.5 USD 3.34	CNY 7.9 USD 1.29	CNY 19.8 USD 3.23

업체명	금강산	한촌	한들
제품 이미지			
제품명	배추김치(400g)	한촌김치 (1,000g)	한들김치(450g)
가격	CNY 6.75 USD 1.10	CNY 19.89 USD 3.24	CNY 10 USD 1.63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타오바오(www.taobao.com)

－ 온라인 기타 절임식품 판매가격

업체명	成都市盈宇食品有限公司	洪湖市井力水产食品有限公司	一品江湖
제품 이미지			
제품명	동부절임(500g)	연근절임(500g)	고추절임(500g)
가격	CNY 15.48 USD 2.52	CNY 37.38 USD 6.09	CNY 16.25 USD 2.65

업체명	一品江湖	一品江湖	一品江湖
제품 이미지			
제품명	양배추절임(500g)	무절임(500g)	泡豇豆(500g)
가격	CNY 12.00 USD 1.96	CNY 14.50 USD 2.36	CNY 13.75 USD 2.24

－ 중국의 절임식품은 대부분 한국에서도 흔하게 절여서 먹는 재료들로 원자재 값에 따라 500g당 가격 선은 적게는 12.00위안에서 많게는 37.38위안까지 달함

－ 청도 한인마트 김치 판매가격

업체명	종가집	경복궁	하나김치
제품 이미지			
제품명	종가집김치(400g)	경복궁김치(500g)	하나김치(1kg)
가격	CNY 13 USD 2.12	CNY 12 USD 1.96	CNY 16 USD 2.61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청도 JUSCO 김치 판매가격

업체명	종가집	경복궁	송원
제품 이미지			
제품명	종가집김치(400g)	경복궁김치(500g)	송원맛김치(300g)
가격	CNY 13.8 USD 2.25	CNY 11.8 USD 1.92	CNY 6.5 USD 1.06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 중국 내 많이 판매되는 한국 제품들은 종가집 제품과 경복궁 제품으로 가격 선은 12~13위안 정도로 보통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절임식품의 가격과 동일한 선임
- － 청도의 오프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은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의 가격과 많이 다르지 않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김치 수출판매가격 (추정)

－ 배추가격이 가장 높을 때

구분		금액 (원/kg)	비고
물품대 (A)		3,633.0	공장도 가격 (맛, 김치, 2013년 09월 가격기준)
수출 부대 비 (B)	내륙운송비	71.3	경남 -> 부산기준 (57만원/20F' 냉장컨테이너 기준)
	수출통관제비	37.5	30만원/컨테이너
FOB가격 (A+B)		3,741.8	-
수입 부대 비 (C)	해상운송료	77.4	US\$600/20F 냉장컨테이너
	해상보험료	2.2	CFR금액(3,819.2원)X0.0577%
	관세	955.4	CIF금액(3,821.4원)X25%
	증치세	812.1	(CIF금액+관세)X17%
	수입통관제비	61.9	3,000위안/건 (8톤 가정)
통관원가 (FOB가격+C)		5,650.8	-
매장 공급 가 (D)	내륙운송비	660	4위안/kg (청도->상해기준)
	수입상 마진	2,208.8	(통관원가+내륙운송비)X35% -상온식품 : 15~20% -신선식품 : 25~35%
매장공급가 (통관원가+D)		8,519.6	-
판매 가격 (E)	매장마진	4,587.5	판매가(13,860.6원)의 35% (*역산) -매장마진 : 판매가 25% -매장리베이트 : 판매가의 5~10%
	판매가격 (매장공급가+E)	13,107.1	-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20F' 냉장컨테이너 8통 적입기준 산출
- kg당 산출이 어려운 매장 입점비와 바코드 비용은 제외됨
- 적용환율 : \$1 = 1,031.5원 , 1위안 = 165원

－ 배추가격이 가장 낮을 때

구분		금액 (원/kg)	비고
물품대 (A)		2,284.0	공장도 가격 (맛, 김치, 2014년 01월 가격기준)
수출 부대 비 (B)	내륙운송비	71.3	경남 -> 부산기준 (57만원/20F' 냉장컨테이너 기준)
	수출통관제비	37.5	30만원/컨테이너
FOB가격 (A+B)		3,392.8	-
수입 부대 비 (C)	해상운송료	77.4	US\$600/20F' 냉장컨테이너
	해상보험료	1.4	CFR금액(2,470.2원)X0.0577%
	관세	617.9	CIF금액(2,471.6원)X25%
	증치세	525.2	(CIF금액+관세)X17%
	수입통관제비	61.9	3,000위안/건 (8톤 가정)
통관원가 (FOB가격+C)		3,676.6	-
매장 공급 가 (D)	내륙운송비	660	4위안/kg (청도->상해기준)
	수입상 마진	1,517.8	(통관원가+내륙운송비)X35% -상운식품 : 15~20% -신선식품 : 25~35%
매장공급가 (통관원가+D)		5,854.4	-
판매 가격 (E)	매장마진	3,152.4	판매가(13,860.6원)의 35% (*역산) -매장마진 : 판매가 25% -매장리베이트 : 판매가의 5~10%
	판매가격 (매장공급가+E)	9,006.8	-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IV 중국 유통 정보

1. 식품 유통채널

□ 중국 식품유통 업계

- 중국의 슈퍼마켓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1급 도시 외에도 최근 2급, 3급 도시에까지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슈퍼마켓은 중국 동부 지역에 특히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 중 베이징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열악한 물류 인프라 수준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대형 슈퍼마켓은 식품과 비식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사용하는 고객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유통업체 현황 >

&	대형 슈퍼마켓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점/ 노점상	도매상	기타
2001	20	28	17	7	28
2002	26	22	13	9	30
2003	32	20	16	3	29

출처: Worldpanel China Access Asia Limited (2009)

1) 주요 현지 슈퍼마켓

- 련화 슈퍼마켓 주식 유한공사 (联华超市股份有限公司) : 199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중국 최대 상업 소매 기업이 되었으며, 대형 종합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형성한 소비자가 가장 믿는 상업 브랜드이며 상하이,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 안휘, 장서, 광둥, 산둥, 산시, 허난, 허베이, 랴오닝, 지린, 신장, 네이멍 등 20개성과 자치구에 100여개의 도시에 연쇄 경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베이징 화렌그룹 투자 지주회사 (北京华联集团投资控股有限公司) : 국가 상무부가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15대 전국 대형 소매 기업 중 하나로, 국제 백화점 협회의

유일한 중국 소매 기업 회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수한 사회 인지도와 명예를 얻어 중국 판매업의 유명 브랜드가 되었음

- 상하이 농공상 슈퍼마켓 유한공사 (上海农工商超市有限公司) : 1994년도에 설립되어 2002년 상하이 통계국이 발표한 제 12차 상하이 100대 기업 중 12위를 차지하였고 현재 8개의 회사와 연쇄 경영 연수 대학으로 구성되어 2002년 국가 농업부 등 9개의 부서는 “농업 산업화 국가 중점 우수 기업”으로 인정함
- 우메이 지주 그룹 유한공사 (物美控股集团有限公司) : 슈퍼마켓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한 그룹회사로, 1994년 종합 슈퍼마켓이 설립되어 줄곧 뚜렷한 성취를 얻음
- 신이차 슈퍼마켓 유한공사 (新一佳超市有限公司) : 1995년도에 설립되어 광둥성 유통의 선진적 기업으로 국가 중점 양성의 20대 상업 기업이며 10년간 전국 각 지역에 106개의 연쇄 지점을 설립함
- 화룬완자 유한공사 (华润万家有限公司) : 중국의 소매판매 체인기업 중 하나로,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며 홍콩에서 규모가 가장 큰 화룬 유한공사의 계열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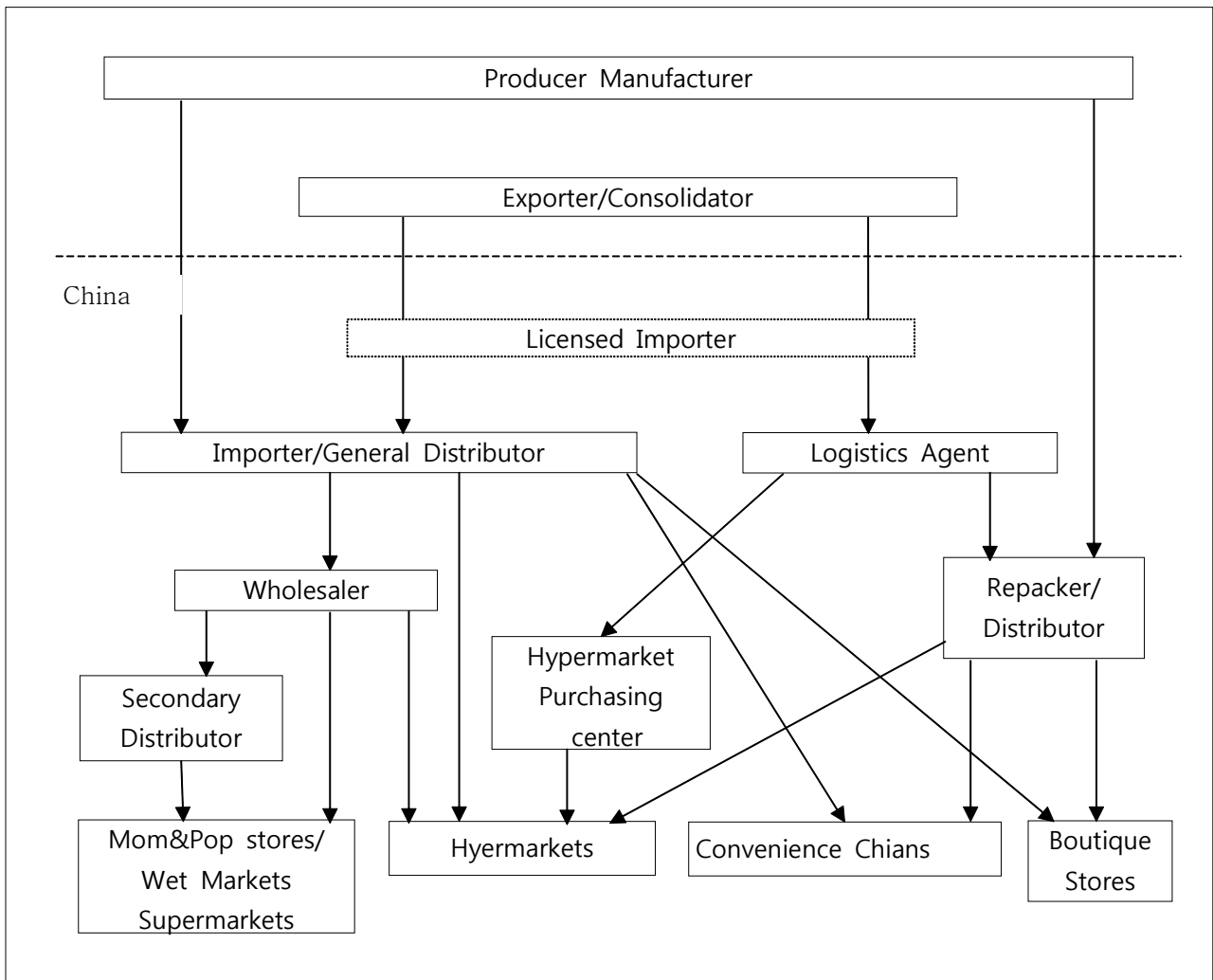
2) 주요 외국계 슈퍼마켓

- 월마트 (沃尔玛) : 현재 전 세계 15개 국가에 8,400개 상점을 설립하여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선전에 처음으로 상점을 설립함 중국에서도 다양한 업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개 성의 101개 도시에 189개 상점을 설립해 50,000건 이상의 취업 기회를 제공함
- 까르푸 (家乐福) : 1959년에 유럽에서 설립된 대형 소매상으로 세계 제2대 국제 소매 연쇄 그룹임 1995년 중국에 진출 후, 국제 선진적인 슈퍼마켓 관리 방식을 통해 사회 각 계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함 현재 중국 25개 도시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109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설립함
- TESCO (乐购) : 1932년 영국에서 설립된 최대 소매 회사로 세계 3대 소매상 중 하나이며 2004년 중국에 진출해 화동, 화베이, 화난 세 지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에 주력하여 22개 도시에 58개 대형 슈퍼마켓을 설립하였으며 17,600명의 직원을 보유함

2. 식품 유통구조

- 전반적으로 중국의 유통구조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나마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과 같은 주요도시에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역사가 긴 유통업체들도 많이 위치해 있음

< 중국의 내부 유통 경로 >



출처 : KATI(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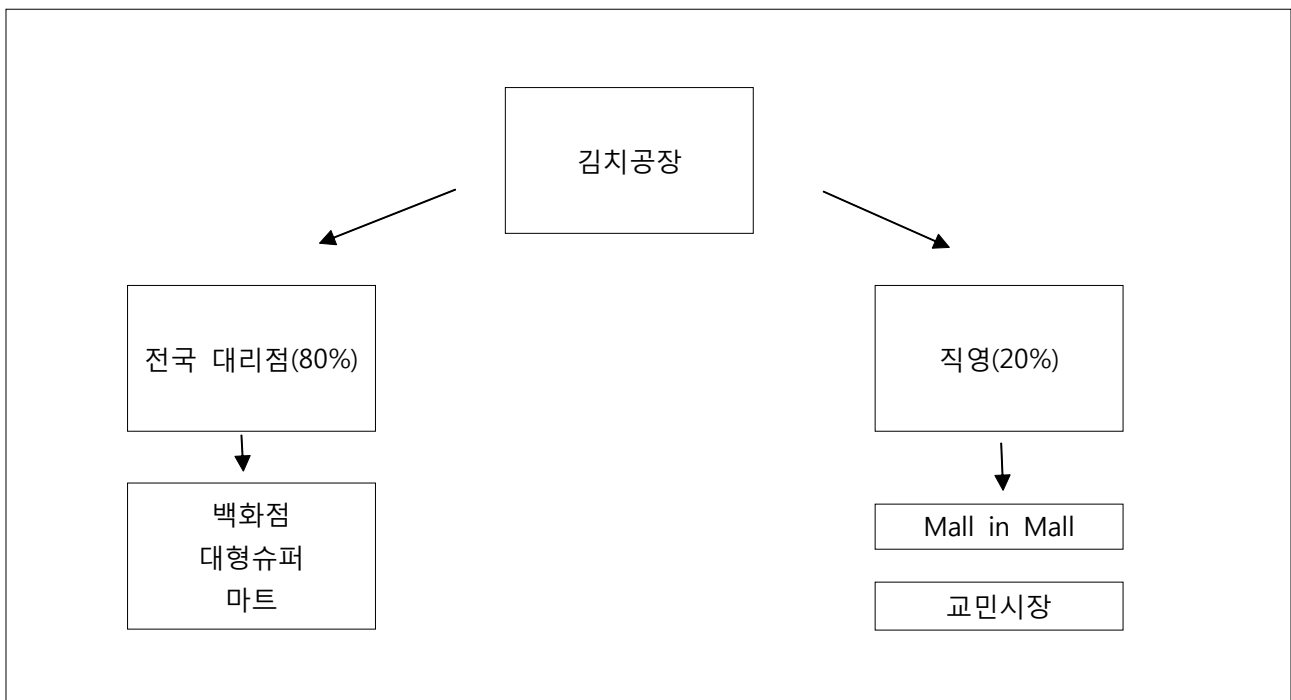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식품은 온도변화나 그 특성 상 목적지인 소비자에 도달하기 전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도시는 단일 식품 유통업체가 담당하여 수입과 적하, 보존과 운송 등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음

3. 김치 유통현황

□ 중국 내 김치 유통현황

- 현지 생산김치는 현지공장 → 백화점, 대형슈퍼, 인터넷 쇼핑몰 → 소비자로 유통되는 형태임
- 북경대상식품의 종가집 김치의 경우 전국 대리점을 통해 80% 물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교민과 직영비중은 20% 내외임

< 김치 유통현황 >



KATI (www.kati.net)

- 대형유통매장의 주 소비층은 중국인이며, 지역별 매출은 상하이, 광둥, 베이징, 칭다오, 선양 순임
- 대형유통매장에서 김치는 보통 절임류 냉장코너에서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포장김치의 중량은 40g, 80g, 400g, 500g, 1kg 형태임
- 포장김치의 유통기한은 3개월로 남은 유통기간이 45일 이내이면 매장에서 회수하거나 폐기조치됨

□ 최근 중국 물류 인프라 현황

－ 유통 경로가 원활하지 않음

- 유통에 있어 길에 있는 시간이 길고, 손실이 크며, 능률이 낮고, 효과와 이익이 부족

－ 물류 시설 수단이 상대적으로 낙후됨

- 교통 수송력이 부족하여 도배시장, 창고 저장, 교통 운송 조건과 수단 등이 비교적 취약하고 고속도로의 취약한 발달 수준 때문에 철도를 통한 소규모 배송으로 과도한 운송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품질보장이 어려움

－ 정보화 시스템 건설이 낙후됨

- 정보 네트워크가 불완전하고, 교류의 경로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정보의 수집 및 전달이 어려움

－ 물류 기술이 낙후됨

- 저온 유통 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보통 상온물류나 자연물류로 이루어짐

V 중국 통관 정보

1. 관세 및 기타 세금

☐ 관세율

- 김치는 가공식품의 일종으로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Acetic Acid or Sugar, not Frozen(식초, 초산,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얼리지 않게 보존된 채소류 또는 그의 혼합물)' 이라는 분류됨
- HS CODE는 「200599」로 나타남

< 관세율 >

HS CODE	품목	기본세율
200599	김치류	25%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중화인민공화국	17%	6% or 3%

출처 : WIKI (2013.2.22.)

☐ 기타 세금

-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관세지급필가격의 사정, 원산지 확정을 통해 관세지급필가격과 세율을 확정하여 세금과 비용을 계산함

－ 수입 관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종가관세	수입관세=과세가격×종가관세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종량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 화물 실제 수입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과세가격×관세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슬라이딩 관세	수입관세(종가)=과세가격×잠정세율 수입관세(종량)=화물수량×잠정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수입 소비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종가징수	소비세=징세가격×소비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1-소비세 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종량징수	소비세=소비품 수량×소비세 세율	
복합징수	소비세=종가 소비세+종량 소비세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수입 증치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종가징수	증치세=징세가격×증치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율+소비세	- 과세가격과 관세를 계산 - 소비세를 계산 - 증치세를 계산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2. 통관 거부사례

1) 김치라면 (不倒翁泡菜面) 통관 거부

구분	내용
통관거부일자	2013년 4월
담당 검역소	北京
조치상황	폐기
물량	48 kg
통관 거부 사유	대장균 검출

2) 해찬들된장 (好餐得大酱) 통관 거부

구분	내용
통관거부일자	2013년 10월
담당 검역소	산동(山東)
조치상황	반품
물량	1,020 kg
통관 거부 사유	대장균균 초과 검출

3) 오징어젓 (牌鱿鱼酱) 통관 거부

구분	내용
통관거부일자	2012년 07월
담당 검역소	산동항검험검역기구(山東口岸檢驗檢疫机构)
조치상황	반송
물량	70 kg
통관 거부 사유	미생물(콜로니(colony),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4) 낙지젓 (章鱼酱) 통관 거부

구분	내용
통관거부일자	2012년 07월
담당 검역소	산동항검험검역기구(山東口岸檢驗檢疫机构)
조치상황	반송
물량	70 kg
통관 거부 사유	미생물(콜로니(colony)) 기준 초과 검출

5) 소금에 절인 냉동 날치알(冻盐渍飞鱼籽)

구분	내용
통관거부일자	2014년 02월
담당 검역소	산둥(山東)
조치상황	반송
물량	9,250 kg
통관 거부 사유	카드뮴 초과 검출

3. 통관 절차

□ 중국 통관 순서

- 식품수출입계약 체결 → 중국 내 수입예정지까지 운송 → 주관부서에서의 검험검역 통과 →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 후, 물품을 중국내로 반입
- 수입업체 또는 대리상은 통관신청서, 계약서 또는 신용장, 영수증과 포장명세서, 포장 기능표, 원산지 증명, 위생평가서류, 생산업체 합격증, 중문 라벨 샘플, 라벨 중문 번역본 등을 제출해야하며 검사검역원이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검사검역을 진행

4. 통관 유의사항

□ 소요서류

- 검험검역과 세관 신고절차에서의 소요서류는 구체 수입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래서는 북경시를 예로 들어 식품 수입 시의 관련 절차에서의 소요서류에 관하여 검토
- 검험검역 시의 소요서류
 - 수입물품세관신고서
 - 무역계약
 - 포장명세서(装箱单)
 - B/L
 - 운송증빙서류(货运发票)
 - 원산지증명
 - 위생평가자료
 - 기타 요청서류
- 예포장식품(预包装食品) 수입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에 아래 조건에도 부합하여야함
- 물품주 또는 그 대리인이 이미 북경검험검역부서에서 수출입예포장식품표식의 등록을 하여 등록코드를 취득하였을 경우, 동 등록코드로 신고할 수 있음
- 물품주 또는 그 대리인이 북경검험검역부서에서 수출입예포장식품표식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중문표식샘플, 샘플의 번역본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 그중, 중문표식의 샘플은 GB7718-2004(预包装食品标签通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세관 통관 시의 소요서류
 - 수출입물품세관신고서
 - 发票
 - 무역계약

- 포장리스트
- B/L
- 적하목록(舱单)
- 세관신고대행 권한위임장
- 수출입 관련 허가증서
- 기타 서류

☐ 수입 규제 제도

－ 규제내용 (관세 및 비관세 규제 등)

- 해당사항 없음

☐ 필수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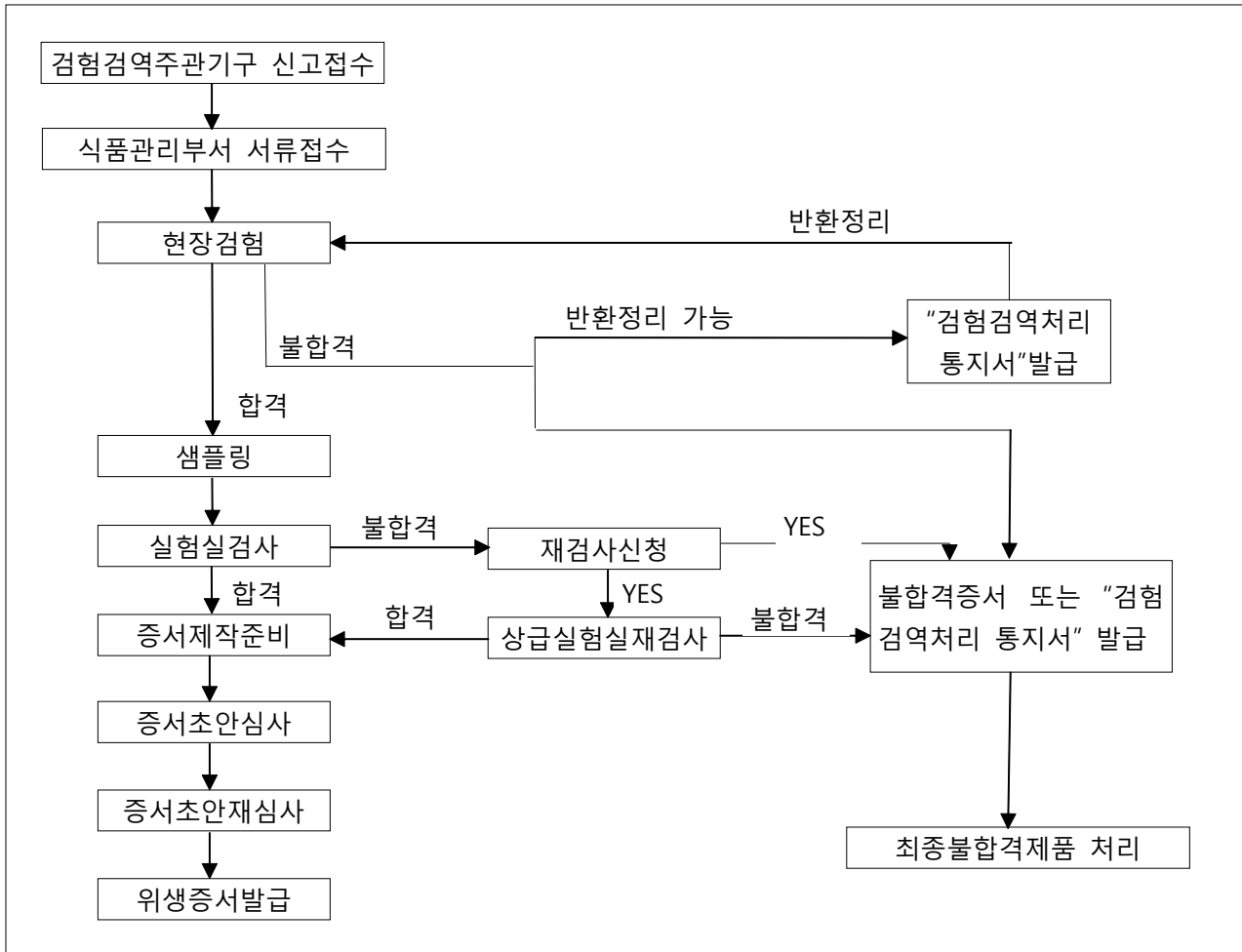
< 필수 인증 >

검사검역 카테고리	인증서 명칭	감독관리조건	인증서 명칭
P	수입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검역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A	수입제품통관증 (入境货物通关单)
R	수입식품위행감독검증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B	수출제품통관증 (出境货物通关单)
Q	수출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검역 (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检疫)		

출처 : 중국식약청 (<http://www.sfda.gov.cn>)

VI 중국 검역 정보

1. 수입 식품의 검험검역



출처 : KATI (www.kati.net)

□ 수입 식품의 검험검역

- 검험검역범위: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도구 및 설비, 기타 식품과 관련된 물품
- 제출서류: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식품 원산지증명서,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 수입식품 관련 중국 규정

- 지난 2011년 9월 13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검험검역국은 ‘수입출식품 안전관리 방법(총국령 제 144호)’ 을 발표함
- 同 방법은 식품수입절차 및 요구기준을 상세히 명시함
- 이 방법이 시행되면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식품 수입 기업 등록여부, 수출상 및 대리상, 검역심사, 항구검역검사, 수령인, 안전검사, 위법기업리스트, 리콜제도 등 관리체계가 더욱 명확히 확립될 것임
- 同 방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2010년 8월 9일 위생부가 발표한 ‘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수입허가 및 관리규정’ 에는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기준이 명시돼 있음
- 이 규정이 정의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이란 해외에서 생산·경영되고 수입된 전례가 없는 식품으로 중국정부가 제정한 별도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임
- 이러한 식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위생부 위생감독센터에 신청서, 배합 및 성분, 생산공정, 기업표준 및 검사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 및 포장, 해외 생산허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의 발행 절차

<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 발행 절차 >

구분	자세한 내용
1	입국지 출입국 검사 검역국에 검사, 검역을 신고함
2	현장 검사 검역 : 식품에 농약, 화학 비료, 화학품이 뒤섞여 오염, 부패, 이물질, 곰팡이, 벌레 등이 있는지의 여부, 냉동식품의 상태, 포장 정비 정도, 위생 요구의 부한 정도 등을 살핌. 포장 식품의 경우, 상표 라벨, 생산일, 유효기한, 품종, 수량 검사 등이 신청한 상황 일치하는 지를 봄. 화물의 현장 상황을 기본적으로 판단 한 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함. 샘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험실에 보냄. 수입 식품은 원칙적으로 천 분의 1의 비율로 샘플을 모으며, 품종 마다, 3개 이상 샘플을 모음

3	실험실 검사
4	검사 결과의 판정 :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 및 표준에 따라 현장 검역 상황, 제공된 재료와 실험실 검사 결과에 대해 종합 판정을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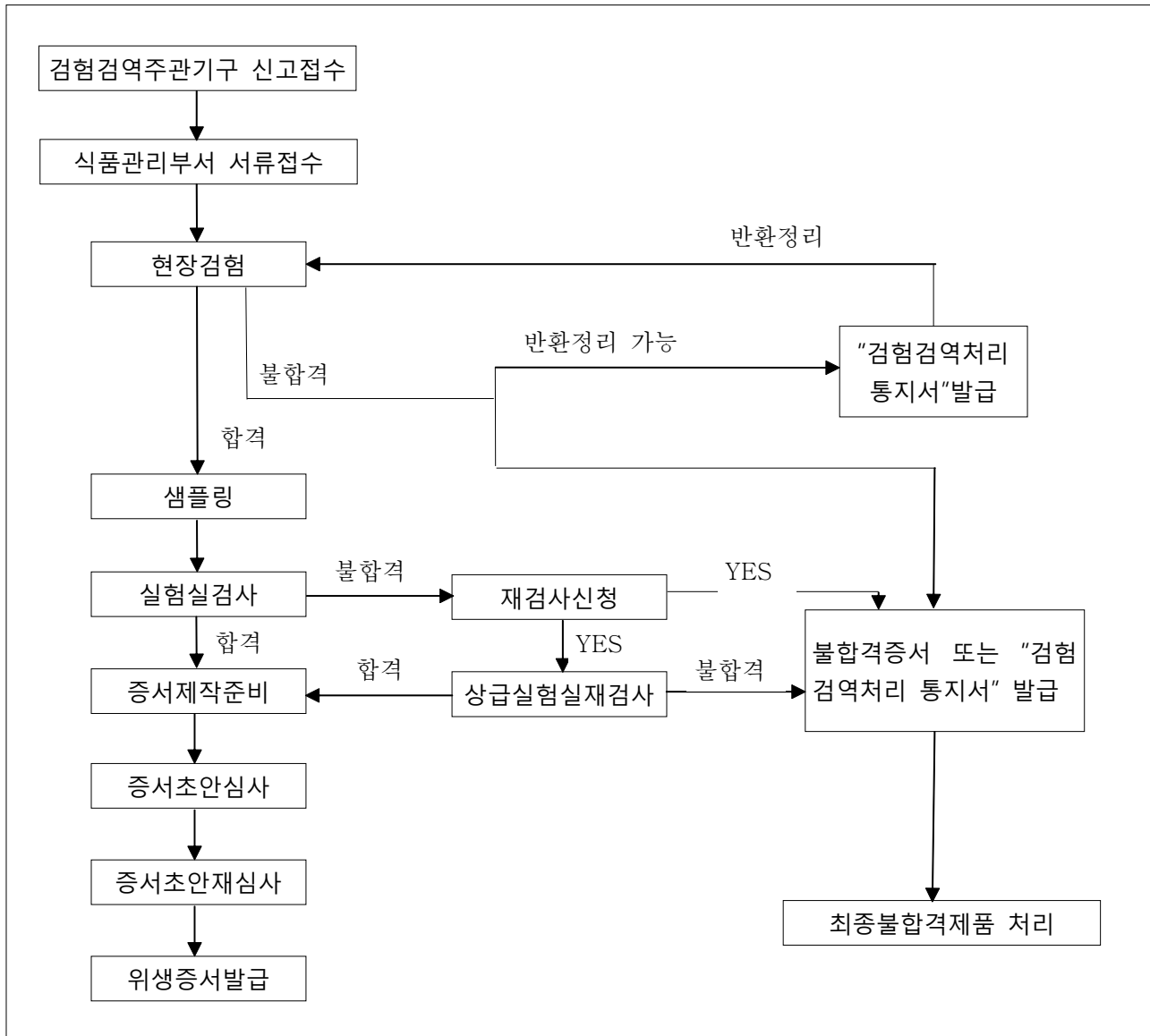
출처 :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소요시간 및 비용

- 중국 기관이 한국기업이 발송한 자료를 토대로 중문 라벨을 제작하는 데 일주일이 소요됨
- 일반화물이 전체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까지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반 가량임
-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10여 종의 수출품은 전체 절차에 10~15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됨
-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완료 약 3일, 통관 후 중문라벨검사에 열흘, 라벨 초보검사합격후 무작위추출검사에 10~15일, 위생허가증과 라벨합격증을 받는데 3일이 소요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검역 비용방법’이 규정된 바는 다음과 같음
 - 식품 검역비용은 일반적으로 400위안을 넘지 않음
 - 수출입 식품라벨의 경우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은 2년임
 - 통관비는 300위안임
 -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0.0045%로 부과됨
 -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28m³)임
 -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임
 -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임
- 대행비의 경우 수출품 가격의 1% 내외로 책정되며, 최소 2,000위안임

2. 수출식품의 검험검역

< 수출식품 검험검역절차 >



출처 : KATI (www.kati.net)

□ 검험검역범위

- 수출식품(예를 들면: 각종 식용, 음용의 제품과 원료, 전통적 습관에 의해 약품에 포함된 식품)과 수출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 등

□ 제출서류

- “출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출입계약서 또는 판매확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생산업체(가공공장, 냉장창고, 창고 등을 포함)의 위생등록 또는 등기번호

VII 중국 라벨링 정보

1. 식품 라벨 관리 규정

□ 총칙

-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표기와 관리에 적용(2조)
- 본 규정의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에 부착, 인쇄, 표기하여 식품의 명칭, 품질 등급, 중량, 식용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 부호, 수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의 총칭(3조)
- 국가질검총국은 직책범위내에서 전국 식품라벨의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조직하며 현급이상 지방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관할지역 식품라벨 감독관리사업을 책임(4조)

□ 식품라벨의 표기내용

- 식품명칭 :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표명하는 식품명칭을 표기(6조)

< 식품명칭 표기요구 >

1. 국가표준, 산업표준이 식품명칭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칭을 사용
2.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상용명칭 혹은 속명을 사용
3. 창신, 특이, 음역, 메이커, 지역속어, 상표 등 오해가 쉬운 식품명칭을 사용시 식품명칭 옆에 동일 글자크기로 1~2항이 규정한 명칭 혹은 분류명칭을 표시
4. 2종 혹은 이상 식품을 혼합하여 외관이 균일하여 호상 분리가 어려운 식품은 식품의 혼합속성과 분류명칭을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
5. 동, 식물을 원료로 특정 가공공정으로 제조하여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성을 모방한 식품은 명칭 앞에 인조(人造), 모방(仿) 혹은 소(素) 등 문자를 붙여야하며 식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분류명칭을 명시해야함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산지 : 식품 산지 표기(7조)
- 생산자&주소표기 : 법에 따라 등록, 등기한 품질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자명칭과 주소를 표기(8조)

< 생산자&주소 기타규정 >

1.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본사 혹은 자회사는 각자 명칭과 주소로 표기
2.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지사 혹은 생산기지는 본사와 지사 혹은 생사기지명칭, 주소 혹은 본사 명칭과 주소로 표기
3. 위탁생산으로 판매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생산허가증관리를 하는 식품은 위탁기업에 관련 생산허가증이 있어야하며 양자명칭, 주소 혹은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4. 분할포장(分装)식품은 분할포장업체의 명칭주소를 표기하고 분할포장(分装)문자 명시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생산일자&유통기한표기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선명하게 표기해야하며 특수저장 조건 표기. 알콜함량 10%(포함)이상 음료주, 식초, 식염, 고체설탕은 유통기한 표기면제가능. 일자표기방법은 국가표준 규정 혹은 년, 월, 일로 표기(9조)
- 정량포장식품 내용량 표기 : 고체와 액체가 각각 포함된 식품은 내용량 외 고형물 함량 표기.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동일 포장면에 표기. 내용량은 <정량포장상품계량 감독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표기(10조)
- 배합원료 표기 : 배합원료는 생산가공시 사용량 순서에 따라 표기.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를 식품에 직접 사용시 식품첨가제항목에 명칭표기. 기타 식품첨가제 사용시 명칭과 종류 혹은 코드 표기(11조)
- 집행표준 표기 : 집행한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번호 혹은 등록된 기업표준 번호 표기(12조)
- 식품집행표준에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공정 표기를 요구시 식품라벨에 표기(13조)
- 생산허가증관리 식품은 식품라벨에 식품생산허가증번호와 QS마크 표기(14조)
- 비 식용제품이 혼입되어 부주의로 인체상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라벨에 경고표기와 함께 중문경고설명 표기(15조)

< 중문설명을 표기해야하는 상황 >

1. 의학임상에서 특수사용자에서 쉽게 위해를 조성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2. 이온화 방사선 혹은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한 경우
3. 유전자변형식품 혹은 법정유전자변형원료가 함유된 경우
4.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에 중문설명을 규정한 경우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명칭 혹은 설명에 <영양(营养)>, <강화(强化)> 표기시 국가표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17조)

< 식품라벨의 표기 금지사항(18조) >

1. 질병예방, 치료작용 명시 혹은 암시
2. 비 보건식품이 보건작용 명시 혹은 암시
3. 사기 혹은 오도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혹은 소개
4. 제품 설명서에 근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5. 문자 혹은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차별성 묘사
6. 국기, 국장 혹은 인민폐 사용
7. 기타법률, 법규와 표주이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식품라벨의 표기 위법행위(19조) >

1.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조 혹은 허위표시
2. 식품산지위조, 기타 생산자의 명칭, 주소 위조 혹은 사칭
3. 생산허가증 표기와 번호 위조, 사칭, 변조
4.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행위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주의사항

- 식품라벨의 표시형식

1.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함(20조)
2. 식품라벨은 최소 판매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21조)
3. 한 개 판매단위 포장에 부동한 품종, 다양한 독립포장 식품이 포함된 경우 매개 독립포장의 식품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22조)
4. 식품라벨은 분명하고 선명해야함(23조)
5. 식품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 단 상표는 제외, 식품라벨은 중문과 외국문자 동시 사용 가능하며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크기는 ≤중문, 단 등록상표는 제외(24조)
6. 식품 혹은 포장 최대표면면적>20cm²인 경우 식품라벨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수자의 높이는 1.8mm보다 커야하며 최대표면면적<10cm²인 경우 식품라벨에 식품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와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표기내용은 규정에 따름(25조)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2.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 검험 감독 관리 규정

□ 총칙

- 본 규정은 수출입 정량 포장 식품 라벨(설명서 포함)의 검험과 감독관리 업무에 적용(2조)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 정량 포장 식품 라벨 검험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이하 검험검역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를 책임(4조)

□ 라벨검험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 제공자료(6조) >

1. 원본 라벨 샘플과 번역본
2.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 샘플
3. 라벨에 표기한 수입상, 경소상 혹은 대리상의 공상영업집조 사본
4.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에 내용을 강조, 예로 수상, 증서획득, 법정산지, 지리표기 혹은 기타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영양성분 함량을 표기한 경우 부합성 증명자료를 제출
5. 첨부해야할 기타증서 혹은 증명문서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검험검역기구는 라벨에 대하여 격식, 지면검사를 진행하고 라벨의 표기내용의 부합여부 검측을 진행. 부합여부 검측은 수출입정량포장식품의 일상검험감독업무와 결합하여 진행하며 단독으로 샘플을 채취하지 않음(7조)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은 검사합격 후 검사를 시행한 검험검역기구에서 등록증빙을 발급(8조)

< 라벨 불합격 상황(9조) >

1. 수입정량포장식품이 중문라벨이 없는 경우
2. 수입정량포장식품 격식, 지면검사결과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표준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부합여부검사결과 라벨표기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출처 : 중국위생부(<http://www.moh.gov.cn>)

- 수입 정량 포장 식품 라벨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1회적으로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게 부합되지 않은 항목의 전부내용을 고지.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 폐기처분을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처리. 기타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하며 기술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반품 혹은 폐기처리(10조)
- 처음으로 수입하여 라벨검사에서 합격한 정량포장식품은 재수입에서 라벨등록증빙과 중국어, 외국어 라벨샘플만 제출(12조)

□ 감독관리

- 국가질검총국은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사업무에 대하여 관리하며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합격된 수입포장식품라벨에 대하여 등록(14조)
-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이 검사 불합격이나 기술처리가 가능한 경우 재검사합격전까지는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5조)
-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는 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에서 불합격 사례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6조)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 동 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량포장식품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라벨에 적용하며 정량포장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석판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용어의 정의

- 정량포장식품 :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그리고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 식품라벨 : 식품포장상의 문자, 도형, 부호와 모든 설명물
- 성분 : 제조 혹은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상품에 존재(성질을 바꾼 형식존재도 포함)하는 그 어떤 물질, 식품첨가제도 포함

- 생산일자/제조일자 : 식품이 최종상품으로 되는 일자, 포장일자나 캔에 든 일자도 포함. 즉 식품 포장물 혹은 용기 중에 포장된 후 최종판매단위로 가는(완성)날짜
- 품질보증기간 : 정량포장식품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 기한 내 상품은 판매에 적합하며 라벨에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설명한 특수 품질을 유지함
- 규격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포장식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순함량과 내포된 개수에 관계에 대한 설명
- 주요전시면 : 소비자가 정량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면

□ 기본요구

- 정량포장식품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봉건미신, 선정성과 기타식품을 헛뜯거나 혹은 과학 영양상식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됨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여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글자크기 혹은 색깔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함
- 정량포장식품라벨의 모든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모종의 성질이 다른 상품과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됨
-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비보건식품은 보건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은 포장물(용기)과 분리되지 않아야 함

- 정량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병음 및 소수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나 상응한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됨
 - 동시에 외국어 사용이 가능하나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함.(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소, 외국 판매대리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함(국외등록상표 제외)
-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 최대표면 면적이 35㎤보다 클 때 강제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 한 판매단위의 포장 안에 다른 종류, 날개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포장이 있을 경우, 날개포장식품마다 각각 표시하여야 함
- 외포장물을 통해 뚜렷하게 내포장물 혹은 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포장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 표시내용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량포장식품 라벨 내용
 - 일반요구 : 식품명칭, 배합원료, 내용량, 규격, 제조상과(혹은)판매자,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조건, 식품위생허가증번호, 제품기준번호와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식품명칭(食品名称)
 - 식품라벨의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모 식품의 한 개 혹은 몇 개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우 그중의 하나 혹은 등효(等效) 명칭을 선택하여야 함.
 -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명칭” 속에 사람들이 식품속성을 오해하는 문자 혹은 용어(단어)가 들어있을 때 표시한 명칭의 옆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진실속성을 나타내는 전

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소비자들이 식품의 진실속성, 물리상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 식품명칭 앞 혹은 식품명칭 뒤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붙일 수 있음. 예를 들면 “건조한, 농축한, 복원한, 훈제한, 기름에 튀긴, 가루상태인, 알갱이 모양인” 등이 있음
- 식품진실속성이 전용명칭이 문자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식품속성에 오해를 가지게 하였을 경우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 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예를 들면 ‘주스음료’의 ‘주스’가 반드시 동일한 글자크기로 하여야 함

<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① 영양성분표	○ 식품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NRV) 대비 백분율 표기 * 양식 : <붙임 1> 참조
② 강제표기사항 (4 + 1)	○ 4대 핵심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열량(에너지)
③ 트랜스지방(산)표기 (反式脂肪(酸))	○ 경화유지 및 부분경화 유지가 식품 배합원료에 함유되거나 생산과정 중 사용할 경우 영양성분표 상에 트랜스지방(산) 함량으로 표기해야 함
④ 선택표기사항	○ 강제표기 사항 외 각종 비타민, 엽산, 아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망간, 불소 등 기타 성분
⑤ 기타사항	○ 열량 및 영양성분 설명 시 '함유', '고저', '유무', '증감' 등의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요구 및 기준조건

< 포장식품 강제영양라벨 표기 면제 제품(해당사항 없음) >

- 생선식품, 날고기, 물고기, 야채, 과일, 난류(달걀, 오리알 등).
- 알코올함량≥0.5%의 음료주류.
- 포장 총면적≤100cm² 혹은 최대 표면면적≤20cm²의 식품
- 즉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품
- 포장된 음용수
- 일일 섭취량≤10g 혹은 10ml인 예포장식품
- 기타법률법규표준에 규정하는 영양라벨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포장식품.
-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 예포장식품이 포장에 어떠한 영양정보를 나타낼 경우, 본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해야 함

출처 : <http://www.nhfpc.gov.cn/>

□ 라벨링 표시 방법

- 법률상의 의무 표시 및 절차 :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정형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품명, 원산지, 제조사, 생산 일자, 번호 또는 바코드, 조합 원료, 주요 성분, 유통기한, 식용 또는 사용 방법 등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식품 및 식품 첨가제 제품 설명서 내용은 과장과 거짓 등 광고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나옴
- 임의 표시: 같은 라벨상 임의 표시 내용으로는 제품 번호, 식용 방법, 에너지와 영양소 등이 있음

< 영양성분표 양식1 >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或NRV%
能量 (열량)	千焦 (kJ)	%
蛋白质 (단백질)	克 (g)	%
脂肪 (지방)	克 (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 (g)	%
钠 (나트륨)	毫克 (mg)	%

< 영양성분표 양식2 >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或NRV%
能量 (열량)	千焦 (kJ)	%
蛋白质 (단백질)	克 (g)	%
脂肪 (지방)	克 (g)	%
— 饱和脂肪 (포화지방)	克 (g)	%
胆固醇 (콜레스테롤)	毫克 (m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 (g)	%
— 糖 (-당)	克 (g)	
膳食纤维 (섬유질)	克 (g)	%
钠 (납)	毫克 (mg)	%
维生素A (비타민A)	微克视黄醇当量 (μg RE)	%
钙 (칼슘)	毫克 (mg)	%

< 영양성분표 양식3 >

营养成分表 nutrition information

项目	每100克 (g) 或100毫升 (mL) 或每份 per100g/100mL or per serving	营养素参考值%或NRV%
能量/energy	千焦 (kJ)	%
蛋白质/protein	克 (g)	%
脂肪/fat	克 (g)	%
碳水化合物/carbohydrate	克 (g)	%
钠/sodium	毫克 (mg)	%

< 영양성분표 양식4 >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 或NRV%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 或NRV%
能量	千焦 (kJ)	%	碳水化合物	克 (g)	%
蛋白质	克 (g)	%	钠	毫克 (mg)	%
脂肪	克 (g)	%	-	-	%

< 영양성분표 양식5 >

营养成分/100g: 能量XXkJ, 蛋白质XXg, 脂肪XXg 碳水化合物XXg 钠XXmg
(영양성분/100g: 열량XXkJ 단백질XXg 지방XXg 탄수화물XXg 나트륨XXmg)

<영양성분표 양식6 >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克 (g) 或 100毫升 (mL) 或 每份	营养素参考值%或NRV%
能量	千焦 (kJ)	%
蛋白质	克 (g)	%
脂肪	克 (g)	%
碳水化合物	克 (g)	%
钠	毫克 (mg)	%

□ 예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표기의 요구 및 조건

구분	함량표기방식	함량요구	제한조건
열량	무열량	$\leq 17\text{kJ}/100\text{g}$ (고체) 혹은 100ml (액체)	지방에서 생긴 열량 $\leq$ 총 열량의 50%
	저열량	$\leq 170\text{kJ}/100\text{g}$ 고체 $\leq 80\text{kJ}/100\text{ml}$ 액체	
단백질	저단백질	단백질에서 생긴 열량 $\leq$ 총열량의 5%	
	저단백질 내원, 혹은 단백질 함유	매 100g 함량 $\geq 10\%$ NRV 매 100ml 함량 $\geq 5\%$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 $\geq 5\%$ NRV	
	단백질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함량 $\geq 20\%$ NRV 매 100ml 함량 $\geq 10\%$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 $\geq 10\text{NRV}$	
지방	무지방 혹은 불포함	$\leq 0.5\text{g}/100\text{g}$ (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지방	$\leq 0.3\text{g}/100\text{g}$ 고체; $\leq 1.5\text{g}/100\text{ml}$ 액체	
	비계가 적다	지방함량 $\leq 10\%$	축육과 가금만 제한
	탈지	액체 우유와 요구르트: 지방함량 $\leq 0.5\%$; 분유: 지방함량 $\leq 1.5\%$	유제품만 제한
	불포화지방이 없다 혹은 불포함	$\leq 0.1\text{g}/100\text{g}$ (고체) 혹은 100ml (액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킴
	저포화지방	$\leq 1.5\text{g}/100\text{g}$ 고체 $\leq 0.75\text{g}/100\text{ml}$ 액체	1.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킴 2. 여기에서 생긴 열량 $\leq$ 총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이 없다 혹은 불포함	$\leq 0.3\text{g}/100\text{g}$ (고체) 혹은 100ml (액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없다 혹은 불포함	$\leq 5\text{mg}/100\text{g}$ (고체) 혹은 100ml (액체)	동시에 저포화지방과 지방의 표기함량요구 및 제한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저 콜레스테롤	$\leq 20\text{mg}/100\text{g}$ 고체 $\leq 10\text{mg}/100\text{ml}$ 액체	
탄수화물(설탕)	설탕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0.5\text{g}/100\text{g}$ (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당	$\leq 5\text{g}/100\text{g}$ (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유당	유당함량 $\leq 2\text{g}/100\text{g}(\text{ml})$	유제품만 제한
	유당이 없다	유당함량 $\leq 0.5\text{g}/100\text{g}(\text{ml})$	

식이섬유	식이섬유 내원 혹은 식이섬유를 함유하다	$\geq 3\text{g}/100\text{g}(\text{고체})$ $\geq 1.5\text{g}/100\text{ml}(\text{액체})$ 혹은 $\geq 1.5\text{g}/420\text{kJ}$	식이섬유 총량이 함량요구에 부합함;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혹은 단체성분 중 임의의 하나에 함량요구에 부합함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혹은 내원이 좋다	$\geq 6\text{g}/100\text{g}(\text{고체})$ $\geq 3\text{g}/100\text{ml}(\text{액체})$ 혹은 $\geq 1.5\text{g}/420\text{kJ}$	
나트륨	나트륨이 없다 혹은 불포함	$\leq 5\text{m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ml(액체)	'나트륨' 표기의 표기에 부합한 경우 '염'자로 '납'자를 대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염', '염분 줄임'
	나트륨 함량이 아주 낮다	$\leq 40\text{m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ml(액체)	
	나트륨 함량이 적다	$\leq 120\text{m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ml(액체)	
비타민	비타민×내원 혹은 비타민 함유×	매 100g $\geq 15\%$ NRV 매 100ml $\geq 7.5\%$ NRV 혹은 매 420kJ $\geq 5\%$ NRV	'다양한 비타민'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표기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비타민 함량이 높음 혹은 풍부함	매 100g $\geq 30\%$ NRV 매 100ml $\geq 15\%$ NRV 혹은 매 420kJ $\geq 10\%$ NRV	'다양한 비타민' 대량으로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표기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광물질(나트륨 안 포함)	×내원, 혹은 ×함유	매 100g $\geq 15\%$ NRV 매 100ml $\geq 7.5\%$ NRV 혹은 매 420kJ $\geq 5\%$ NRV	'다양한 광물질'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의 표기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높음 혹은 ×풍부함	매 100g $\geq 30\%$ NRV 매 100ml $\geq 15\%$ NRV 혹은 매 420kJ $\geq 10\%$ NRV	'다양한 광물질' 대량으로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의 표기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몹'으로 식품계량단위로 삼을 때 100g(ml)의 함량요구에 부합하여만 표기할 수 있음.			

□ 함량표기 및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불포함, 무	영'0', 없음. 100% 불포함, 무, 0%	함유, 내원	제공, 함유, 있음
아주 낮다	아주 적다	대량으로 함유, 높다	내원이 좋다. ×× 풍부하다. 풍부한 ××, 높은×× 제공함
낮음	적음. 지방이 적다*		
* '지방이 적다.' 저지방표기에만 적용됨			

□ 열량과 영양성분비교표기의 요구 및 조건

비교표기의 방식	요구	조건
열량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열량이 25% 이상 감소함	참고식품(기준식품)이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속성의 식품이어야 함
단백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단백질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지방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지방이 25% 이상 감소함	
콜레스테롤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콜레스테롤이 25% 이상 감소함	
탄수화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탄수화물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설탕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설탕이 25% 이상 감소함	
식이섬유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식이섬유가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나트륨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나트륨이 25% 이상 감소함	
광물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광물질이 25% 이상 감소함	
비타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비타민이 25% 이상 감소함	

자료 출처 (<http://www.nhfpc.gov.cn>)

□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10월 22일에 “식품 안전법” 과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27일에 발표한 “식품라벨관리규정” 을 수정

<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제1조	식품라벨 감독관리를 강화, 식품라벨 표기를 규범화, 품질사기를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품질법”, “식품위생법”,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및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함	식품라벨 감독관리를 강화, 식품라벨 표기를 규범화, 품질사기를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제품품질법”,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함
제8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등기하고 제품품질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이어야 함	식품라벨은 반드시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u>연락방식</u> 을 표기해야 한함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등기하고 제품품질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이어야 함
제9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게 식품의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해야 함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게 식품의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해야 하며, <u>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저장조건을 표기해야 함</u>
제9조 제2항	<u>식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저장조건과 연관될 경우에 반드시 식품의 특정 저장조건을 표기해야 함.</u> 에틸알코올의 함량이 10% 이상(10%를 포함)인 음료주, 식포, 식용소금, 고태 설탕류는 품질보증기간의 표기를 면제할 수 있음	에틸알코올의 함량이 10% 이상(10%를 포함)인 음료주, 식포, 식용소금, 고태 설탕류는 품질보증기간의 표기를 면제할 수 있음
제10조 제1항	정량포장의 식품라벨은 반드시 순함량을 표기해야 함. 고체, 액체의 2가지 상태 물질의 식품에 대해 순함량을 표기하는 외에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정량포장의 식품라벨은 반드시 순함량을 표기해야 하고, <u>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규격을 표기해야 함.</u> 고체, 액체의 2가지 상태 물질의 식품에 대해 순함량을 표기하는 외에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제11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식품의 배합원료리스트를 표기해야 함	식품라벨은 반드시 식품의 <u>성분 또는 배합원료</u> 리스트를 표기해야 함
제11조 제4항	없음	영아와 유아, 기타 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식과 보조 간식은 그 라벨에 주요 영양성분과 함량도 표기해야 함
제12조	식품라벨은 반드시 기업이 적용하는 <u>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의 번호 또는 등록된 기업표준의 번호</u> 를 표기해야 함	식품라벨은 반드시 기업이 적용하는 <u>제품표준의 코드</u> 를 표기해야 함
제26조	본 규정의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에 <u>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u>

	벌금을 부과함	과함
제28조	본 규정의 제9조, 제15조를 위반하여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본 규정의 제15조를 위반하여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제30조	생략	삭제

VIII 중국 바이어 정보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에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KATI.NET 내 중국 시장정보
- KOTRA 중국 (광저우) 무역관 자료
- 중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v.cn/>)
- 중국 식약청 (<http://www.CFDA.gov.cn/>)
- 중국 식품안전검사국 (<http://www.mfa.gov.cn>)
- GTA (<http://www.tradestatics.com/gta/>)
- Alibaba 내 바이어 디렉토리